

# 심판위원회 규정

사단  
법인

대한철인3종협회

제 정	2014. 05. 30.
개 정	2017. 01. 21.
개 정	2018. 01. 27.
개 정	2019. 02. 15.
개 정	2020. 02. 06.
개 정	2021. 04. 30.

## 제 1장 총 칙

**제1조(근거 및 명칭)** 대한철인3종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정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며,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  
<개정 2021.04.30.>

**제2조(목적)**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, 심판으로서의 역할, 임무,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.<개정 2019.02.15.>

**제3조(적용범위)** ① 이 규정은 위원회, 및 협회에서 자격 취득한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.

② 협회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규정을 정하고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04.30.>

③ 이 규정과 대한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 <개정 2021.04.30.>

④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‘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’에 따른다.<신설 2019.02.15., 개정 2021.04.30.>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
2. 심판의 권익 보호·증진에 관한 사항
3. 심판양성 교육(심판 아카데미)에 관한 사항
4.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
6.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##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

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부위원장 3인 이내
3. 위원 11인 이상 15명 이하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협회 정관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21.04.30.>
2.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3. 경기인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%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4.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 <신설 2017.01.21.>
5.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신설 2019.02.15., 개정 2021.04.30.>

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6조(위원의 위촉)** 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하되, 위원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7.01.21.>

**제7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**제8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하며,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.<개정 2019.02.15.>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9조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02.15.>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<개정 2017.01.21.>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<개정 2017.01.21.>
3. 제13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<신설 2019.02.15.>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개정 2017.01.21.>
5.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<개정 2017.01.21.>
6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**제10조(회의소집)**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**제11조(의결정족수 등)**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**제12조(긴급한 업무처리)**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13조(위원의 제척 및 회피)**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위원 본인,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체육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
2.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
3.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

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.

**제13조의2(의무사항)** 위원회의 위원,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·유포할 수 없다.
2.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.

### 제3장 심판 등록 및 관리

**제14조(심판등록 구분)** ① 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하되, 협회의 특성이나 심판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.

심판 등급 분류 <개정 2021.04.30.>

국제심판	비고
레벨 C	국내 3급을 국제 레벨 C로 통합
레벨 1	국내 2급을 국제 레벨 1로 통합
레벨 2	국내 1급을 국제 레벨 2로 통합
레벨 3A	
레벨 3B	

② 국제연맹으로부터 심판교육 과정을 2016년 6월 15일자로 공인 받음에 따라 국제 심판 과정으로 통합 운영한다. <개정 2021.04.30.>

**제15조(심판등록 및 활동)**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경기인등록규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매년 심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02.06., 2021.04.30.>

② 제1항에 따라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당해 협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2.06., 2021.04.30.>

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의 자격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협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 자격정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<개정 2020.02.06.>

④ 심판의 등록 취소는 경기인등록규정 제37조에 따른다.<신설 2020.02.06.>

**제16조(정보 제공)** ① 체육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, 선수·지도자경력, 심판경력, 교육이수경력,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체육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 요청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.

## 제4장 심판 양성 교육(심판아카데미)

**제17조(심판자격 부여)** ① 협회는 레벨 C 심판과정과 레벨 1 심판과정을 국제연맹 규정에 부합하게 실시하고, 상기 과정을 이수한 후 당해연도 심판 실습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심판증을 발급한다. <개정 2021.04.30.>

② 삭제<2021.04.30.>

③ 레벨 1 이상의 심판자격을 획득한 자는 대한체육회 클린심판 아카데미에 참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04.30.>

**제18조(심판자격 유효기간)** ① 심판자격 유효기간은 심판자격 획득 후 4년이다.

②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보수교육을 받아 심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.<개정 2017.01.21.>

**제19조(심판아카데미 파견)** ①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함양, 인성 교육을 통해

심판 부정, 비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체육회가 주관하는 통합 교육에 심판을 파견한다.

② 등록된 심판은 교육대상이며, 이수 심판에 대해서는 협회 역할 분장시,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.

③ 교육에 참가한 심판은 체육회의 운영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.

**제20조(교육실시)** ① 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·운영한다.

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, 보수교육, 강습회, 심판활동과 도덕,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,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, 경기규칙, 판정의 이론, 실기 교육 등 협회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심판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)** ① 심판 강습회 교육 프로그램은 국제연맹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사용한다. <개정 2021.04.30.>

②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실시하고자 할 때는 국제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실시한다. <개정 2021.04.30.>

## 제5장 심판평가 및 배정

**제22조(심판평가)** ① 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.

② 협회는 상임심판, 협회에 등록하여 당해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04.30.>

③ 협회는 실정에 맞게 지표 등을 매 경기 가능한 2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,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.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,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.

**제23조(심판기피 및 제척)** ① 협회는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,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협회 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, 지도자의 친인척, 동일 대학 출신은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.

**제24조(심판배정)** ① 협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.

② 심판 배정 시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심판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.

③ 협회의 심판위원회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.<개정 2019.02.15.>

1. 체육회가 승인한 상임심판 <신설 2019.02.15.>
2.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심화교육(심판아카데미)과정을 이수한 심판<신설 2019.02.15.>
3.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(심판아카데미)과정을 이수한 심판<신설 2019.02.15.>
4. 대회별 실시하는 심판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심판
5. 개최지역(도, 광역시 단위) 거주자 50%까지 우선 배정, 단 체전 및 국제대회는 예외로 한다.

**제25조(심판판정)** ①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2.15.>

1.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<신설 2019.02.15.>
2. 심판 관련 규정과 협회의 규약 및 심판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<신설 2019.02.15.>
3.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.<신설 2019.02.15.>

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.

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, 협회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협회는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시 비디오 재 판독 및 최소 3년 이상 영상보관의 의무를 대회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⑤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는 국제연맹 및 협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26조(심판의 품위)** ① 심판은 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.

② 심판은 당해 단체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④ 심판은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⑤ 심판은 오심 및 편파판정에 대하여 협회 및 체육회의 ‘스포츠공정위원회’ 규정에 따라 징계(문책) 받을 수 있다.<개정 2019.02.15.>

⑥ 심판은 선수·지도자의 팀(단체 등) 입단,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,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## 제6장 상벌 및 심판 매뉴얼

**제27조(심판의 상벌)**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협회 ‘스포츠 공정위원회규정’에 따라 처리한다.<개정 2019.02.15.>

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,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.

**제28조(심판의 포상)**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
② 협회에서는 우수 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29조(심판매뉴얼)** 협회는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## 제7장 심판비 및 각종 수당 지급<신설 2017.01.21., 개정 2020.02.06.>

**제30조(심판비 지급 기준)** ① 심판비는 등급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 심판은 대회 전날 정오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여 심판회의에 참여해야 한다.

1) 표준거리 이하(표준거리, 스프린트 코스) 대회<개정 2021.04.30.>

직위	심판비
기술감독, 주심, 심판장	90,000원
레벨 2	60,000원
레벨 1	40,000원
레벨 C	20,000원
교통비	60,000원(왕복, 모든 심판)
간식비	1일 5,000원
실습심판	실습 심판의 경우 경기당일 10,000원씩 2식을 제공한다.

2) 중거리 (하프, O2코스) 대회<신설 2019.02.15., 개정 2021.04.30.>

직위	심판비
기술감독, 주심, 심판장	100,000원
레벨 2	70,000원
레벨 1	50,000원
레벨 C	30,000원

교통비	60,000원(왕복, 모든 심판)
간식비	1일 5,000원
실습심판	실습 심판의 경우 경기당일 10,000원씩 2식을 제공한다.

3) 장거리 대회<개정 2021.04.30.>

직위	심판비
기술감독, 주심, 심판장	120,000원
레벨 2	105,000원
레벨 1	75,000원
레벨 C	45,000원
교통비	60,000원(왕복, 모든 심판)
간식비	1일 5,000원
실습심판	실습 심판의 경우 경기당일 10,000원씩 2식을 제공한다.

② 식비는 일식에 중거리 이하는 10,000원씩 4식을 제공한다. 장거리의 경우 5식을 제공한다.

제31조(기타 수당 지급 기준) ① 대회 관련 기타 수당은 등급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 <개정 2020.02.06.>

직위	수당
의료디렉터	500,000원
의료요원	100,000원 ~ 150,000원
시설설치철거요원	100,000원 ~ 150,000원
본부 운영 요원	100,000원 ~ 150,000원
수상인명구조원	50,000원 ~ 100,000원
CPR	30,000원 ~ 50,000원

제8장 심판강습회 참가비 및 강사비<신설 2017.01.21.>

제32조(심판강습회비) ① 심판강습회 참가비는 다음과 같이 수령한다. <개정 2020.02.06., 2021.04.30.>

강습회 등급	참가비
레벨 1 강습회	150,000원
레벨 C 강습회	150,000원(심판복 지급)
보습회	레벨 1, 레벨 C 100,000원

제33조(심판강습회 강사비 지급 기준) ① 심판강습회 강사 수당은 다음과 같이

지급한다. <개정 2021.04.30.>

강습회 등급	강사비
레벨 1 강습회	780,000원(60,000*13시간)
레벨 C 강습회	480,000원(60,000*8시간)

### 제9장 심판증 발급<신설 2017.01.21.>

제34조(심판증 발급) ① 자격증 취득시 무료로 심판증을 발급하나, 훼손, 분실 등에 대한 재발급시 20,000원의 발급비를 수령한다. <개정 2021.04.30.>

### 제10장 심판 배정<신설 2017.01.21.>

제35조(심판 배정 기준) ① 대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판 인력을 구성한다. <개정 2021.04.30.>

구분	인원	자격		
		전국체전 이상	전국대회	지방대회
기술감독	1명	레벨 2 이상	레벨 2 이상	레벨 2 이상
의무감독	1명	의사	의사	의사
주심	1명	레벨 2 이상	레벨 2 이상	레벨 2 이상
심판장	1명	레벨 2 이상	레벨 2 이상	레벨 2 이상
등록 디렉터	1명	레벨 1 이상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
등록 부디렉터	1명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	레벨 C 이상
등록 심판	3명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	레벨 C 이상
기록 디렉터	1명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	레벨 C 이상
경기장 통제	1명	레벨 1 이상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
수영 디렉터	1명	레벨 1 이상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
수영 부디렉터	1명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	레벨 C 이상
수영 심판	2명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	레벨 C 이상
바꿈터 디렉터	1명	레벨 1 이상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
바꿈터 심판	4명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	레벨 C 이상
사이클 디렉터	1명	레벨 1 이상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
사이클 부디렉터	1명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	레벨 C 이상
사이클 심판	2명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	레벨 C 이상
차량 통제 (코스상 차량 및 오토바이)	1명	레벨 1 이상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
휠스테이션 디렉터	1명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	레벨 C 이상
휠스테이션 심판	1명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	레벨 C 이상
바켓수 디렉터	1명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	레벨 C 이상
달리기 디렉터	1명	레벨 1 이상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
달리기 부디렉터	1명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	레벨 C 이상
달리기 심판	2명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	레벨 C 이상
보급소 디렉터	1명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	레벨 C 이상

페널티 디렉터	1명	레벨 1 이상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
결승점 디렉터	1명	레벨 1 이상	레벨 1 이상	레벨 C 이상
총	35명			

단 장거리 대회의 경우, 코스에 따라 부별로 심판을 추가할 수 있다.

## 제11장 심판의 활동 연령<신설 2017.01.21.>

제36조(심판의 활동 연령) ① 심판 활동 연령은 만19세 이상부터 65세 이하로 한다.

## 제12장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대한철인3종협회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하되 첫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 조(임기에 대한 예외) 이 규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 시작 직후 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.

제3조(경과조치) (구)대한체육회 산하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과 (구)국민생활체육연합회 산하 대한철인3종연합회가 자격을 부여한 심판자격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통합 이후는 본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. <개정 2016, 2021.04.30.>

### 부칙 (2017. 1. 2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 (2019. 2. 1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 (2021. 4. 3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